

제35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2025. 1. 24.(금)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실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우청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이우청·박승직·윤철남·이철식·이충원·권광택·김희수·
김대일·황명강·김진엽·김창기·김재준·서석영·남영숙 의원 (14명)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신설 안 제5조의 2).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제24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검토완료
- 규제심사 :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검토의견 : 검토완료(소방본부 재난대응과)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제출

6.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 2025. 1. 14. ~ 1. 2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1호
- 의견제출 : 의견 없음

7. 검토의견

가. 조례개정 필요성

-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시킨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구체화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로 일부개정이 필요함.

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안 제5조(손실보상)는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신설하여 소방기본법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에 따른 긴급조치 중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규정이라고 판단됨.
- 안 제5조의2(손실보상 기준 등)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제5조(손실보상)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함.

- 제3항에서는 안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를 따르도록 하고,

<p><참 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p> <p style="text-align: center;">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p>	
<p>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p> <p>2. 부상등급의 기준</p> <p>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p> <p>4. 보상금 지급순위의 기준</p> <p>5. 보상금의 환수 기준</p>	<p>「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에 따른다.</p> <p>「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다.</p> <p>「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사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에 따른다.</p> <p>「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 제4항에서는 안 제5조제2호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p>**의사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관련법에 따라 인정한 사람</p>

- 안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는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안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손실보상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고 적정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2항 중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기피”를 “해당 위원의 기피”로 하고, “위원”을 “대상이 되는 위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금번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시킨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구체화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개정 취지와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 개정 후 소관부서에서는 안제5조의2에 따른 소방활동 중 손실보상을 위한 면밀한 기준 검토와 합리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손실보상 등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참고 1

시·도별 조례 현황

소방본부

시·도	조례명	제·개정일자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3. 28. 개정 2020. 12. 31.	조례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7. 10. 개정 2020. 3. 10.	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6. 8. 개정 2024. 2. 23.	조례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제정 2018. 12. 28. 개정 2021. 4. 9.	조례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제정 2021. 9. 30. 개정 2024. 5. 10.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1. 4.	조례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5. 13. 개정 2024. 1. 4.	조례

관계법령 발취

□ 소방기본법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